

---

---

# 英祖代 蕩平政局下 國家義理書 편찬과 戊申亂 해석

— 『勘亂錄』, 『御製大訓』, 『闡義昭鑑』의 비교 검토 —

---

허 태 용

(한국과학기술원 대우교수)

---

머리말

I. 『勘亂錄』의 무신란 해석

II. 『御製大訓』의 무신란 해석

III. 『闡義昭鑑』의 무신란 해석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6558).

● 투고일: 2014. 11. 3.    ● 심사일: 2014. 11. 3.    ● 게재확정일: 2014. 11. 17.

www.kci.go.kr

## 요약

辛壬獄事를 거치고 즉위한 英祖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正統性 확립이었다. 영조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치 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한편으로 『勘亂錄』, 『御製大訓』, 『闡義昭鑑』과 같은 ‘국가의리서’를 편찬하여 새로운 국가의리를 확정함으로써 정통성을 강화하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주목되는 점은 영조가 정통성을 천명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국가의리를 새로이 확정할 때마다 무신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수반되었다는 점이다.

무신란 진압 직후에 편찬된 『감란록』에서 무신란은 김일경을 비롯한 소론 일부 과격파들이 저지른 역란이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봉당 간의 갈등과 당론이 최초의 근원으로서 해석되며, 소론과 서덕수를 비롯한 노론의 공동 책임이 강조되었다. 한편 임인옥안이 소각된 후 1741년 신유대훈이 선포되고 그것을 간행한 『어제대훈』에서는 더 이상 서덕수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신원되었던 데다가 임인옥 자체가 무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제대훈』에서는 김용택, 이천기, 이희지, 심상길, 정인중의 5인의 노론 인사만이 무신란과 관련된 자들로서 규정되었다.

1755년 발생한 을해옥사는 그간 노·소론 간의 충돌되는 정치의리를 나름 공존시키고, 그 위에서 탕평정국을 운영하려던 영조의 정치적 자세를 크게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을해옥사의 최종 결과물이었던 『천의소감』에서는 무신란의 발생 책임이 전적으로 소론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무신란의 기원은 여태까지와 달리 김일경이 아니라, 유봉휘와 조태구까지 소급되었다. 무신란은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조대 탕평정국의 변화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영조 집권기 최대의 핵심 사건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영조, 무신란, 탕평, 『감란록』, 『어제대훈』, 『천의소감』

## 머리말

52년 동안 재위하면서 수많은 治績을 남긴 英祖였지만 재위 기간 내내 그를 괴롭히면서 떠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正統性이었다.<sup>1)</sup> 先王인 景宗에게서 자신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부정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인식은 李天海의 사건에서 보듯 즉위 직후부터 여러 형태로 널리 확산되면서 영조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었던 것이다. 1728년(영조 4)의 戊申亂은 그런 인식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던 영조는 난의 진압 못지않게 사후 처리 과정에서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강화하면서 노·소론 모두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蕩平政局을 주도하려고 노력했다. 己酉處分과 『勘亂錄』의 편찬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유처분을 통해 노론에게 出仕 명분을 제공한 영조는 『감란록』을 통해서 무신란이 黨論에 입각한 잘못된 정치의리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음을 적시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闡明하였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무신란의 배경과 기원에 대한 나름의 총체적인 역사해석을 내렸다. 이는 무신란이 경종대부터 당대에 이르는 연속적인 역사적 시간 위에서 발생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과 직결되어있음을 잘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해석은 무신란 이후에도 조정에 참여할 명분을 모색하고 있던 소론들의 필요성까지를 반영한 일종의 정치적 합의물이었기에 영조대 초기 탕평정국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

1) 이런 맥락에서 영조가 가장 집착했던 명분이 景宗의 하교와 ‘三宗血脈’의 논리였다고 보인다. 『英祖實錄』 권33 9년 1월 辛丑(19); 『英祖實錄』 권36 9년 12월 丙辰(9); 『英祖實錄』 권40 11년 2월 己巳(28)

하지만 『감란록』에는 노론의 인식은 반영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감란록』만으로 영조에 대한 의구심이나 혐의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감란록』의 가치와 위상은 잠정적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미 갖고 있었다. 예상대로 노·소론 간의 갈등은 종식되지 못하였고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도 잇달아, 결국 1755년(영조 31)의 乙亥獄事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영조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치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한편으로 『御製大訓』, 『闡義昭鑑』과 같은 ‘國家義理書’를 각 붕당들의 협조와 동의하에 추가로 편찬하여 새로운 국가의리(國是)를 확정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탕평정국의 변화가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주목되는 점은 영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천명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국가의리를 각 붕당들의 협조와 동의하에서 새로이 확정할 때마다 항상 무신란의 배경과 기원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수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영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문제 및 각 붕당이 견지한 정치의리가 무신란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表裏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신란은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조대 정국의 변화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영조 집권기 최대의 핵심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조대 시기별로 간행된 국가의리서에서 드러나는 역사인식의 추이와 영조대 탕평정국의 변화를 함께 연동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영조대 탕평정국의 변화를 의리서의 편찬을 통해서 파악한 여러 연구들은 대개 한 종류의 국가의리서에 집중해서 그것이 편찬된 시점의 정국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노력하였기 때문에<sup>2)</sup>, 시기별로 여러 차례 편찬된 의리서들의 차이점들을 통시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영조대 후반부터 정조대까지의 주요한 국가의리서를 탕평정국의 君臣義理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sup>3)</sup>, 이 연구는 신유대훈(1741) 이후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감란록』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어서 영조대의 국가의리를 일관되게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본 글에서는 영조대 탕평정국의 각 단계를 대표하는<sup>4)</sup> 국가의리서인 『감란록』, 『어제대훈』, 『천의소감』을 대상으로 해서 무신란을 해석하는 시각이 변화되는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영조대 탕평정국이 각 단계별로 특정한 정치의리 및 역사인식의 공유와 합의 위에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2) 李銀順, 1986, 「18세기 老論一黨專制의 成立過程: 辛壬士禍와 闡義昭鑑의 논리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10; 김백철, 2010, 「英祖의 義理明辯書 闡義昭鑑의 편찬과 정국변화」, 『精神文化研究』 121; 이근호, 2011, 「영조대 후반 御製訓書의 간행 양상과 의의-『御製大訓』과 『御製常訓』을 중심으로」, 『藏書閣』 26; 히태용, 2014,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勘亂錄』의 편찬」, 『韓國史研究』 166
  - 3) 崔誠桓, 2009,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영조대 탕평정국은 시각에 따라 여러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탕평정국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인 신유대훈과 을해옥사를 획기로 삼는 삼분법을 따랐다.(李根浩, 2001, 『英祖代 蕩平派의 國政運營論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렇게 되면 『감란록』은 전기를, 『어제대훈』은 중기를, 『천의소감』 후기를 각각 대표하는 국가의리서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만조도 이 세 기록물이 영조대 각 단계마다 제설정된 탕평의 명분과 방향타였다고 규정하였다. 정만조, 2012, 「영조대의 정국추이와 탕평책」,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05쪽.

## I. 『勘亂錄』의 무신란 해석

무신란의 정부 측 공식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감란록』은<sup>5)</sup> 宋寅明이 강조하였듯이 단지 토벌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숨겨진 진실을 후세에 전하겠다는 목적에서<sup>6)</sup> 재조 소론들과 영조의 합의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 말은 사실상 『감란록』이 단지 과거사의 정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국 운영의 지침이 될 정치의리를 담게 될 것을 일정하게 예시하는 것이었다. 『감란록』에 담길 정치의리는 편찬의 주체인 영조와 재조 소론들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기인할 수밖에 없었다.

국왕인 영조는 무신란이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란을 발생시킨 명분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 드러내서 자신의 정통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조정에 소론 측이 계속 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명분도 일부 남겨 두어야 했다. 경종대의 당국자들로서 신임옥사를 직접 처리하였던 소론들이 자신의 조정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야 말로 경종에게서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증명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자신이 연루된 임인옥사가 그것을 담당했던 소론들에 의해서 반복될 때야 말로 자신의 정통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클 것이기도 했다.<sup>7)</sup> 즉 영조에게 소론은 아직 정치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 세력이었기에 노론 측으로부터 예상되는 공세

5) 『감란록』은 영조 4년 5월 5일에 편찬 방침이 확정되었고 그 후 1년 반여 후인 5년 11월에 간행과 배포까지 마무리되었다.

6) 『承政院日記』 英祖 4년 5월 29일

7) 『英祖實錄』 권78 28년 12월 甲辰(18)

를 적절하게 막아줄 논리를 마련하는 것 역시 영조의 문제의식 속에 포함되었다. 그것은 곧 그가 즉위 직후부터 추구하였던<sup>8)</sup> ‘탕평’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재조 소론들은 무신란이 소론 측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신란의 주도 세력들과 자신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식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반란 진압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재조 소론으로서는 그들의 문제의식이 영조의 문제의식과 공유될 수 있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재조 소론들 내에서도 李光佐, 趙泰億을 중심으로 한 계열과 宋寅明, 趙顯命을 중심으로 한 ‘탕평파’ 계열 간에 정치적인 지향의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일단 이 시기 이들은 대결보다는 공존을 지향하고 있었다.<sup>9)</sup>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신란의 수습 방향과 그것의 최종적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감란록』의 편찬은 결국 영조와 재조 소론의 이런 정치적 문제의식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감란록』의 편찬이 결정된 이후인 1728년 6월 1일 議政府를 통해서 中外에 通告한 글에서는<sup>10)</sup> 무신란에 대한 조정의 종합적인 성격 규정이 잘 드러났는데, 이는 이후 완성된 『감란록』의 역사 인식을 미리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8) 『英祖實錄』 권2 즉위년 11월 己酉(9); 辛亥(11)

9) 총재관 이광좌가 직접 조문명, 송성명, 송인명을 실록청 도청당상으로 삼은 것(『英祖實錄』 권12 3년 7월 乙丑; 8월 辛亥; 권13 9월 甲寅), 이광좌가 『감란록』 편찬의 책임을 조태억과 송인명에게 맡기자고 한 것(『英祖實錄』 권18 4년 5월 乙卯(5)), 송인명과 조현명이 조정에서 이광좌를 버리고서는 국사를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英祖實錄』 권21 5년 3월 丁未(3)) 등을 들 수 있다.

10)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이 통고문의 초안은 영의정 李光佐가 작성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년 5월 28일

1. 金一鏡, 睦虎龍의 大逆 이후 그 남은 무리들의 행위가 乙巳年 李天海의 변과 지난 가을의 흉서 사건에서 극도에 이르렀다.
2. 여러 죄인들의 공초를 종합해보면 김일경이 癸卯年에 쓴 教文이 흉악한 말을 선동한 근본이다.
3. 그 뒤 이천해의 변과 沈維賢의 흉언 유포, 李順觀의 꾀서는 모두 閔觀孝, 朴弼顯, 李有翼 등이 지휘한 것인데 모두 김일경의 교문에서 나왔다.
4. 朴弼夢 또한 김일경과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로 악을 같이하여 서로 도운 자이다.
5. 심유현은 왕실의 인척으로서 그의 말은 사람들을 어지럽히기 쉽기에 피어서는 거짓을 퍼뜨리게 하였다.
6. 李麟佐, 鄭希良 등의 역적도 모두 박필현, 이유익, 심유현이 종용한 것이니 모두 김일경의 교문에서 근원한 것이다.<sup>11)</sup>

한 마디로 이번 반란은 사실상 김일경의 계묘년(1723) 교문에 근원한 것으로서 김일경의 남은 무리들이 심유현을 피어서는 흉언을 만들어서 꾀서 사건을 일으켰고 급기야 이번 반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정리이다. 이러한 정리는 김일경 계열의 소론과 철저히 구별되어야하는 재조 소론의 문제의식과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소론 일부를 보호하려는 영조의 문제의식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성격 규정만으로는 예상되는 노론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아내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후 鄭益河나 李亮臣에게서 잘 드러나듯이<sup>12)</sup> 노론들이 보기에는 吳命恒, 이광좌 역시 역당을 비호하고 등용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치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11) 『英祖實錄』 권18 4년 6월 庚辰(1)

12) 『英祖實錄』 권19 4년 8월 戊子(10); 권21 5년 2월 癸卯(28)

없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론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론 측에도 역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양자를 대비함으로써 소론에 대한 과상적인 공격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색은 『감란록』 편찬이 결정된 5월 5일 영조의 언급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심유현의 집을 破家瀦宅하는 문제로 臺諫들과 논쟁하던 영조는 김일경, 목호룡이 반역을 도모하던 즈음에 徐德秀의 차마 들을 수 없는 공초가 나왔기에 그들이 기화를 얻은 듯이 흉악한 마음을 더 싹 띄우며 흉언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였다. 즉 흉언과 흉악한 마음을 처음 일으키도록 조장한 자가 景宗 시해 모의에 가담하였음을 자백한<sup>13)</sup> 서덕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노·소론 모두에 역적이 있으며 상호 관련되었다는 말이었다.<sup>14)</sup>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노론이 모두 李天紀와 鄭麟重의 무리가 아니듯이 소론 역시 모두 김일경, 박필몽의 무리가 아님을 설파하면서 흉역을 범한 자들을 제외하고 별 탈이 없는 이들이 黨을 버리고 화합하면 봉당을 타파할 하나의 기회라고 강조하였다.<sup>15)</sup> 이러한 정리는 무신란 발생이 하나도 봉당 때문이고, 들도 봉당 때문이라는 3월 25일 영조의 하교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sup>16)</sup> 무신란 처리 방침에 관한 노론 측의 공격을 상쇄하여 이후의 정국을 탕평으로 이끌겠다는 문제의식이 발현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729년(영조 5)에 8월에 내려진<sup>17)</sup> 己酉處分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내려진 정치적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같은 해 11월에 완성된

---

13) 『景宗實錄』 권 2년 5월 13일

14) 영조는 이와 유사한 언급을 9월에도 남겼는데 소론에 김일경이 있다면 노론에도 임인옥에서 처형된 정인중의 무리가 있으니 역이 나오지 않은 당이 없다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년 9월 24일

15) 『承政院日記』 英祖 4년 5월 5일

16) 『英祖實錄』 권16 4년 3월 乙亥(25)

17) 『英祖實錄』 권23 5년 8월 庚申(18)

『감란록』에도 재조 소론과 영조가 합의한 평가와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것은 어제서문을 통해서 무신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설명으로 정리되었다.

1.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당쟁이 고질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가, 한 번 굴러서는 의심하고 멀리하게 되었고, 두 번 굴러서는 찬출이 잇달았으며, 세 번 굴러서는 서로 살육하다가 임금을 무함하고 악역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2. 차자를 올리거나 상소한 것은 의심하고 멀리한 소치였는데 역적 목호룡의 흉서가 앞에서 창도하고 서덕수, 金聖節, 趙洽의 흉악한 공초가 뒤에서 호응하였다.
3. 김일경이 지은 교문이 흉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흉언을 만들어서 심유현을 찢는 데까지 이르렀다.
4. 역적 목호룡으로 하여금 무함하게 한 근원은 김일경과 박필몽이고 교문을 지어서 임금을 무함하여 반역을 한 것도 김일경과 박필몽이다.
5. 또한 최초의 기원을 궁구해보면 봉당에서 유래한 것이다.<sup>18)</sup>

『감란록』의 핵심적 주장을 양괄식으로 오롯이 담고 있는 이 어제서문을 통해서 재조 소론들의 문제의식과 영조의 문제의식이 결합되어서 무신란에 대한 하나의 역사 해석으로 귀결되었음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즉 무신란의 최초 원인은 봉당이고, 직접적인 근원은 김일경과 박필몽인데, 여기에는 서덕수와 같은 노론 측 인사들도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영조는 탕평정국을 주도할 수 있

18) 『勘亂錄』 御製序勘亂錄仍戒大小臣僚

는 명분을, 재조 소론들은 자신들과 무신란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정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노론 측의 반발 속에서도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무신란에 대한 이런 해석은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무신란에 대한 해석이 또 다시 변화할 수 있음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런 합의의 과정에서 한 가지 논란이 있긴 하였다. 사간 李世璣이 柳鳳輝의 상소를 『감란록』 첫 머리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19)</sup> 이는 무신란의 기원을 어디까지 소급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인식의 문제였던 셈인데 李堦이나 趙文命, 鄭羽良 같은 조정의 핵심 인물들까지 그의 의견이 세상의 公議라거나, 『감란록』의 찬수자들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두둔한 것을 보면<sup>20)</sup>, 이세진의 상소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 재조 소론들 내에서 ‘탕평파’에 속하는 인물 중 일부는 연잉군 시절의 영조가 세제로 책봉된 후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유봉휘까지도 내쳐야한다는 입장을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sup>21)</sup> 유사한 모습은 사실 앞선 1725년(영조 1)에 유봉휘를 토죄하였던 소론 李端章에게서도 발견되지만<sup>22)</sup> 당시는 노론 정국이었던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아마 유봉휘를 토죄할 것이 예상되는 노론 측의 공세를 미리 원천 봉쇄함으로써 『감란록』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려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죽은 유봉휘의 官爵을 丁未換局 이후에 회복시켰던<sup>23)</sup> 영조는 유봉휘의 상소가 망령되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다른 뜻이

19) 『承政院日記』 英祖 5년 9월 27일

20) 『承政院日記』 英祖 5년 9월 30일

21) 이런 입장은 자신들이 편찬한 『景宗實錄』에서 유봉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景宗實錄』 권14 4년 3월 己亥(25)

22) 『英祖實錄』 권8 원년 12월 己巳(6)

23) 『英祖實錄』 권12 3년 7월 丁巳(3)

없었음이 명확하다면서 이런 의견을 일축하였다. 이런 식으로 따져 올라가다보면 유봉휘뿐 아니라 趙泰耇는 물론 宋時烈과 尹拯의 일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였다.<sup>24)</sup> 유봉휘를 보호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이는 다름 아닌 영조 자신이었던 것인데, 아마 이광좌를 비롯한 원로급 인물들을<sup>25)</sup> 고려한 정치적 배려가 아닐까 싶다. 이광좌와 영조의 검토로 최종 확정된 『감란록』의 草本을<sup>26)</sup> 이제 와서 수정하는 것은 이광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었고, 게다가 유봉휘의 상소를 『감란록』의 제일 앞에 두는 것은 기유처분에도 불만을 토로하며 조정을 떠나있던 이광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란록』에서 무신란의 기원으로 서 유봉휘가 직접 언급되는 부분은 없게 되었다.<sup>27)</sup>

## II. 『御製大訓』의 무신란 해석

기유처분과 『감란록』의 편찬을 통해서 영조와 재조 소론들은 탕평정국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게 되었지만 재야를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던 김일경 계열의 소론들은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었다.

24) 『承政院日記』 英祖 5년 9월 30일

25) 예를 들어 예조판서 金始煥은 유봉휘를 두둔하면서 그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년 9월 30일

26) 『承政院日記』 英祖 5년 윤7월 8일; 『承政院日記』 英祖 5년 8월 20일

27) 굳이 『감란록』에서 유봉휘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자면 어제서문에서의 “더러는 차자를 올리고 더러는 상소를 한 것은 의심하고 멀리한 소치였는데” 라는 구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조는 유봉휘의 상소를 넣는 문제로 논란이 있던 중에 유봉휘를 적극 변호하면서 그가 한 일은 역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때 이 구절을 직접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5년 10월 5일 “茲於昨日作此序文 而或筭或疏 出於疑阻之致云者 予知其本心 非出於逆”

우선 1730년(영조 6)에는 전 전라감사 鄭思孝의 아들과 인척들이 상궁들과 결탁하여서 궁궐에 뺏가루를 묻은 사건과 환관들이 궁궐에 방화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다.<sup>28)</sup> 또한 1733년(영조 9)에는 報恩에서 李濟東 등이 중심이 된 역모 사건이 발생하였고<sup>29)</sup> 南原에서도 金元八의 궤서 사건이 발생하였다.<sup>30)</sup> 물론 영조는 단호하게 처리하였지만 이 사건들은 『감란록』의 간행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정통성에 대한 김일경 계열 소론의 의문은 여전하였으며 무신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반대의 차원에서 노론 측 역시 대단히 불만스러웠다. 1729(영조 5)년 正言 吳瑗은 儲位가 정해진 후에 유봉휘가 旗幟를 세우자 여러 역적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면서 김일경을 무신란의 근본으로 삼는 것의 부당함을 강변하였고<sup>31)</sup>, 대사헌 趙尙綱은 유봉휘의 상소가 김일경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감란록』 서문을 정면에서 비판하였다.<sup>32)</sup> 1730년 11월에 金有慶도 『감란록』을 언급하면서 이인좌의 情狀을 알았던 자들은 죽었는데 김일경의 정상을 안 자들은 버젓이 顯用되고 있는 현실과 유봉휘의 官階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sup>33)</sup> 더 심할 경우에는 1731년(영조 7)에 趙觀彬이 『감란록』을 비판하면서 이광좌와 이삼이 逆魁라고 주장하며 탕평정국을 정면에서 비난하거나<sup>34)</sup> 1735년(영조 11)에 李台重이 『감란록』에서 역적으로 규정된 서덕수의 신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노론 측에서는 최소한 유봉휘부터는 무신란의 기원으로 규정

---

28) 조윤선, 2007, 「英祖 6년(庚戌年) 謀叛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42

29) 『英祖實錄』 권33 9년 3월 壬寅(21)

30) 『英祖實錄』 권35 9년 8월 甲寅(6)

31) 『英祖實錄』 권21 5년 3월 癸亥(19)

32) 『承政院日記』 英祖 5년 10월 20일

33) 『英祖實錄』 권28 6년 11월 丁卯(2)

34) 『英祖實錄』 권30 7년 10월 丙辰(26)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노론 측의 반응에 대해서 영조는 조관빈을 제주에 遠竄하거나<sup>35)</sup>, 『감란록』의 서문을 들면서 이태중을 黑山島에 위리안치 시키는 등<sup>36)</sup> 강경하게 『감란록』의 해석에 입각해서 탕평정국을 이끌어갔다. 『감란록』의 역사인식은 기유처분 이후의 탕평정국이 지탱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과 바로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가 이른바 ‘十九下教’(1733)에서 여러 당에 모두 난적이 있다는 점과, 서덕수와 김창집의 불순한 행위를 비난한 것, ‘夜半洞諭’(1735)에서 김창집에게 신하의 節操가 없다고 한 것, ‘混沌開闢’ 유시(1737)를 통해서 기유처분의 내용을 재삼 확인한 것 등은<sup>37)</sup>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sup>38)</sup>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소론들의 손을 통해서 임인옥을 뒤집어 자신의 혐의를 벗어야 하는 영조의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기유처분에 기반한 탕평정국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영조는 金昌集·李頤命의 신원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노론 측의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으로 조정 내에 점차로 노론 인사들을 등용해서는 그들이 노론 측의 요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sup>39)</sup> 兪拓基가 1738년(영조 14) 8월에 호조판서로 등용된 것은 이런 흐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직후인 12월에 峇城府夫人이 사망하자 왕비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구실로 서덕수에 대한 신원을 전격적으로 명하였다.<sup>40)</sup>

35) 『英祖實錄』 권30 7년 10월 丁巳(27)

36) 『英祖實錄』 권40 11년 4월 乙丑(25)

37) 『黨議通略』 「英宗朝」

38) 기유처분부터 경신처분까지 영조 및 탕평파 대 노론 측의 탕평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 과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韓知希, 2012, 『朝鮮後期 政治上의 是非明辨論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3~178쪽.

39) 鄭萬祚, 1986,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歷史學報』 111, 71쪽.

40) 『英祖實錄』 권47 14년 12월 戊子(10)

서덕수는 三手의 음모를 자백한 인물이었기에 임인옥을 뒤집어서 삼수의 음모에 관련되었다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서덕수의 신원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이다.41) 이때 영조는 서덕수를 『감란록』에 신도록한 것은 의도가 있던 것이지만 김성철이나 조흠이 無狀한 것과는 달리 단지 어리석어서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재해석하였다.42) 이는 이 시점까지도 국가의리를 상징하던 『감란록』의 기록을 다소나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감란록』에서 확정된 역사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기유처분에 기반한 국가의리가 무너진다고 여긴 소론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였지만, 오히려 영조는 여세를 몰아서는 노론 측의 요구와 탕평과의 동의에 입각해서 김창집·이이명을 復官시키고43) 임인옥은 誣獄으로, 癸卯年(1723)의 討逆庭試를 別科라 고치는44) ‘庚申處分’(1740)을 단행하였다.

경신처분으로 노론 측의 의리가 상당히 관철되면서 기유처분에 입각해 전개되었던 탕평정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영조로서는 노·소론의 연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被禍된 자들의 신원에 기반한 정국 장악 명분을 획득하는 문제가 최우선이었던 노론 측과는 달리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최우선이었던 영조에게 경종대의 당국자였던 소론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壬寅鞫案을 불사르는 결정인 辛酉大訓(1741)을 선포하면서도 ‘僞詩’ 사건과45) 관련된 金

41) 정만조, 앞의 논문, 80쪽.

42) 『承政院日記』 英祖 14년 12월 10일 “德修爲人 予固知之 不過矇瞶見欺者 勘亂錄中 命入之者 意蓋在而比節洽有異 洽節則尤無狀”

43) 『英祖實錄』 권51 16년 1월 壬子(10)

44) 『英祖實錄』 권51 16년 6월 壬午(13)

45) 1729년의 기유처분을 통해 建儲代理는 非逆으로 인정되었으나 임인옥사의 실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노론 측에서는 임인옥사까지 무옥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반면에 소론 측에서는 김용택과 이천기의 움직임이 경종의 즉위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그것이 逆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기에 노론 측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다. 이에 閔亨洙는 김용택과 이천기 등이

龍澤, 李天紀 등 5布衣의 죄를 별도의 罪案에 두면서 그들의 죄를 大訓에 써 넣은 것이나<sup>46)</sup>, 朴文秀와 李宗城의 요구에 따라 三黨에 모두 역적이 있었음과 5포의 죄가 경중 즉위 이전부터였음을 대훈에 첨가하는 후속 조치까지 내린 것은<sup>47)</sup> 소론 측의 반발을 최대한 줄여서 그들이 조정에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하려던 영조의 정치적 고려였다고 보인다.

신유대훈을 간행하여서 책자로 만든 것이 『어제대훈』인데 「御製大訓」, 「御製告廟文」, 「御製教大小臣僚中外民庶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sup>48)</sup> 이 『어제대훈』의 핵심은 ① 신축년의 建儲는 慈聖의 下敎와 景宗의 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며, ② 목호룡의 무고에 근거해 김일경이 만든 임인옥은 誣獄이었으므로 그 흉안은 불사르고 被罪人은 신원하되, ③ 金龍澤, 李天紀, 李喜之, 沈尙吉, 鄭麟重<sup>49)</sup>만은 별도의 逆安을 만들어 둔다는 것이었다.<sup>50)</sup> 『어제대훈』의 간행을 통해서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드디어 완전하게 벗을 수 있었기에 이 간략한 어제서를 『續五禮儀』나 『續大典』와 함께 3대 편찬 사업이라고 자부하면서 나의 일은 끝났다고 하였다.<sup>51)</sup> 이제 『어제대훈』에서 무신란을 해석한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제대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숙종에게 연잉군의 보호를 부탁받았다고 변명하였고 그 증거로서 숙종이 친히 작성하고 연잉군이 쓴 시를 김용택의 아들인 金遠材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용택과 이천기 등의 행위는 정당성을 갖게 될 수 있었지만 조현명이 영조에게 문의한 결과 그런 일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여러 신료들에 의해서도 僞詩로 관명되었다.

46) 『英祖實錄』 권54 17년 9월 丙戌(24)

47) 『英祖實錄』 권54 17년 9월 戊子(26); 『黨議通略』 「英宗朝」 이 초치는 김재로 등의 반발로 뒤에 취소되었다. 『英祖實錄』 권54 17년 9월 辛卯(29)

48) 『御製大訓』(奎 3929)

49) 실록에서는 鄭麟重으로 표기되었는데 『어제대훈』에서는 鄭麟重으로 표기되었다.

50) 정만조, 앞의 논문(2012), 55쪽.

51) 『英祖實錄』 권60 20년 12월 甲辰(1)

1. 숙종 승하 후 삼중혈맥은 皇兄과 과인뿐인데 공로를 탐내는 무리와 두 마음을 품은 무리들이 각기 서로 기회를 엿보아서 亂逆을 釀成시켰다.
2. 김일경, 목호룡의 일은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그들의 의도는 전적으로 儲位를 무함하여 宗社를 위태롭게 하는 데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지난날의 다른 국안에 비할 수가 있겠는 가? 바로 무신년의 嚆矢이다.
3. 김일경과 목호룡이 伏法되고 僞勳이 이미 삭제되었으니 이와 같은 凶案을 결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壬寅鞫案을 즉시 불에 태워버려 역적의 근원을 없애 버리도록 하라.
4. 신축년(1721)에 저사를 세운 것은 慈聖이 하교하신 바요 皇兄께서 명하신 바이다. 정대한 授受의 즈음에 분수에 넘친 공을 바라고 不逞한 邪謀를 간직하여 목호룡으로 하여금 三手의 흉악한 말을 내도록 하여 종사가 이로 인해 망할 뻔하였다.
5. 黨翳으로 세상이 캄캄한 밤중이 되어 한편에서는 김용택의 무리만으로는 부족하여 聯筭까지 一案으로 몰아넣고, 한쪽에서는 김용택의 무리까지 신원하기를 청하였다.
6. 僞詩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짊어진 자가 세상을 광혹시킬 뻔하였다. 김용택, 이천기, 이희지, 심상길, 정인중은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기애 모두 역적으로써 斷案한다.
7. 이를 간행해서 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 아! 나의 자손들은 나의 訓飭을 따라 지키고 동요되지 말 것이며, 혹시라도 지난 일을 들추어내 다시 黨翳을 빚어내는 자가 있을 경우는 법으로 처단하여 世道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공고히 하라.52)

직접 작성한 『어제대훈』을 통해서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이 삼종혈맥이라는 생물학적 조건과 자성의 하교, 경종의 명에 의한 것임을 가장 강조하면서 다른 어떤 조건이나 행위도 자신의 즉위에 영향을 줄 수 없었음을 밝히 드러냈다. 그리고 동시에 僞詩 사건에 관련된 노론 측 인물 5포의 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이 분수에 넘친 공로를 탐내면서 불령한 모의를 간직하였다가 목호룡의 흉언을 도출하였고, 김일경과 목호룡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옥을 일으켜 종사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옥인 임인국안은 불사르지만 김용택, 이천기, 이희지, 심상길, 정인중만은 역적으로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신란과 관련해서 『어제대훈』에서는 김일경과 목호룡이 효시임을 명확하게 강조하면서도 공로를 탐내는 무리와 두 마음을 품은 무리들의 잘못을 모두 언급함으로써 노·소론을 모두 난역의 기원으로서 해석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御製告廟文」, 「御製教大小臣僚中外民庶書」에서는 黨習과 黨癩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 방식은 『감란록』에서의 해석방식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다만 『감란록』에서는 목호룡과 건주어진 노론의 난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서덕수와 김성절, 조흠을 명시하였다면 『어제대훈』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모두 빠지고 대신해서 김용택, 이천기, 이희지, 심상길, 정인중의 5인만이 공을 탐낸 무리로서 규정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미 서덕수가 신원된 후의 시점이기도 하였지만, 『어제대훈』에서는 이 5인을 제외한 나머지 노론 측 인물들을 모두 신원하였기 때문에 김성절과 조흠 역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sup>54)</sup>

52) 『御製大訓』 「御製大訓」

53) 『御製大訓』 「御製告廟文」 “猗歟 我朝樹綱正名 君臣分義昭若日星 痛矣 黨習橫熾于中 末流之弊 釀成鏡夢”; 「御製教大小臣僚中外民庶書」 “王若曰 嗚呼 我朝禮義名分正嚴 君君臣臣繼繼相承 痛哉 黨癩終成逆亂”

54) 이미 영조는 신유대훈 이전에도 김성절과 조흠이 형벌을 이기지 못해서 거짓 자백

따라서 무신란을 해석하는 전반적인 논리 구조는 『감란록』과 『어제대훈』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감란록』에서는 서덕수, 김성절, 조흠으로 대표되는 다수의 노론 측 인물들이 무신란을 양성한 존재들로서 해석되면서 무신란의 발생에 노론 측의 잘못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임인옥의 실체가 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어제대훈』에서는 오직 5포의만을 언급함으로써 무신란을 양성하는 데에 끼친 노론 측의 잘못은 상당히 축소시켰다.<sup>55)</sup>

이렇게 볼 때 대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란록』의 서문 중 무신란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던 것은 매우 당연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1741년(영조 17) 9월 12일 좌의정 송인명은 『감란록』의 서문 중에서 이미 신설된 사람이 실려있기 때문에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아뢰었고, 영조는 그것이 서덕수, 조흠, 김성절을 언급한 구절임을 알아챘다. 영의정 김재로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자, 영조는 자신의 재위 기간에 고치지 않으면 후대에 내가 지은 글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우의정 조현명만은 이미 8도에 반포한 서적을 모두 다 고치는 것은 어렵다는 점과 大誥寶訓의 文字를 지금 와서 고치면 國體가 끝내 뒤집힐 것이라면서 심하게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송인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는 등<sup>56)</sup> 大臣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일단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sup>57)</sup>

---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英祖實錄』 권51 16년 6월 甲戌(5)

55) 사실 경종대에 이미 사망한 5포의를 무신란과 관련시킨 것은 소론 측이 조정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규정이었기 때문에 영조는 소론에 대한 나름의 정치적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6) 경신년(1740) 이후 송인명과 조현명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다는 실록의 평가는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英祖實錄』 권6 22년 8월 甲戌(11)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송인명의 주장대로 대훈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이미 신설된 서덕수와 김성절과 조흠의 이름을 『감란록』에 남겨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현명의 말처럼 『감란록』의 서문을 수정하는 것은 『감란록』이 상징하고 있던 기유처분 이래의 국시를 흔드는 것이었고, 그것은 소론들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었다. 조현명의 반대는 이런 염려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결국 영조가 결론을 내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한 것은 대훈을 선포해도 『감란록』의 위상을 갑자기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자신의 정치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임인국안은 무욕이라고 불사르면서도 소론을 배려해서 그 국안에 실려 있던 5포의는 별도로 죄안에 두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조치와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 시점에서 영조는 이렇듯 임시방편적인 결정을 통해서라도 노·소론이 함께 참여하는 탕평정국의 기본 틀을 깨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결국 『어제대훈』이 간행된 후에도 『감란록』의 서문은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신란에 대한 다소 구별되는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임인국안은 소각되었는데 5포의는 별도의 죄안에 남아 있고, 대훈 선포로 5포의를 제외한 모든 被罪人들이 신원되었는데도 『감란록』 서문에 서덕수 등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57) 『承政院日記』 英祖 17년 9월 12일

### Ⅲ. 『闡義昭鑑』의 무신란 해석

영조는 『어제대훈』을 계기로 국시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훈을 干犯한 자에 대해서는 惡逆이나 誣上不道の 죄와 같이 국정을 설치해서 진위를 밝히도록 『속대전』에 규정하는 한편으로<sup>58)</sup>, 친히 良役·學校·軍制·用人·錢貨 다섯 조목의 策題를 직접 낸 것에서 보이듯<sup>59)</sup> 得意의 정국을 맞아 정치 운영을 봉당의 조제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전해갔다.<sup>60)</sup>

하지만 이미 송인명이 잘 예측하였듯이<sup>61)</sup> 임인옥이 뒤집히면 반드시 임인옥의 治罪를 맡은 이들에 대한 請罪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유봉휘, 조태구, 이광좌 등에 대한 노론 측의 거세진 공세가 대훈 선포 이전부터 있었거니와<sup>62)</sup>, 이때 이들의 논리는 맨 먼저 앞장서서 역적들을 이끈 자가 유봉휘이고 이후 조태구·崔錫恒·김일경·박필몽이 뜻밖의 놀라운 일을 선동하였으며 급기야는 목호룡의 흉서와 무신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대훈이 선포된 후에도 대훈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노론 측의 분위기는 이어졌고<sup>63)</sup> 급기야 1742년(영조 18) 閔昌洙는 5포의의 행위를 옹호하다가 제주로 유배되었다.<sup>64)</sup> 이는 어느 정도 대훈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모순에서 기인한 결과이기도

58) 『大典會通』 권5 刑典 推斷 [圖] …(중략)… 凡關係惡逆誣上不道干犯大訓者外 勿爲設鞫”

59) 『英祖實錄』 권56 18년 9월 乙丑(9)

60) 이경구, 2004,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 『역사와 현실』 53, 35쪽.

61) 『承政院日記』 英祖 16년 6월 13일 “寅明曰 此下教則非反案 乃釐正也 若反案則反案後 必有請罪其按治之臣者矣”

62) 『英祖實錄』 권51 16년 5월 戊午(19)

63) 『英祖實錄』 권54 17년 10월 甲寅(23)

64) 『英祖實錄』 권55 18년 1월 己丑(29)

하였지만 대훈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영조 역시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이때의 소동은 결국 世子の 入學禮를 기해서 成均館에 蕩平碑를 세워 다시 한 번 탕평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sup>65)</sup>

하지만 孝章世子 때는 소론 조문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노론 洪鳳漢의 딸을 世子嬪으로 삼은 것에서<sup>66)</sup> 보이듯 노론의 득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sup>67)</sup> 몇 년 후인 1746년(영조 22) 이조판서 朴弼周는 소론에 대한 토죄 논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경종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훈에 첨가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sup>68)</sup> 경종에게 질환이 있었음이 명확해져야 노론 측의 건저·대리 요청이 정당하게 되는 반면에, 경종의 질환을 틈타서 국정을 농락했던 김일경 계열과 그것에 동조한 조태구, 유봉휘, 최석항, 조태억, 이광좌 등 소론 대신들에 대한 치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sup>69)</sup> 뒤이어서 聯名 摺紳 57인의 疏頭로서 尹陽來가 상소해서는 조태구, 유봉휘, 이광좌, 조태억, 최석항이 신임옥사 및 무신란의 근본이라면서 토죄를 요구하였고<sup>70)</sup>, 奉朝賀 김유경도 상소를 올려서 박필주의 주장에 힘을 더하였다.<sup>71)</sup>

조현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론 측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대훈의 수정이 아닌 소론 대신들에 대한 토죄까지 막아내기에는 힘에 부쳤다. 조태구의 ‘冒嫌’이라는 흉언이 한 번 옮겨 가서 유봉휘의 상소가 되고, 두 번 옮겨 가서 김일경의 교문이 되었으며, 세 번 옮겨 가서 무신란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三司에서 조태구, 유봉휘, 이광좌, 조태억, 최석항의

65) 이근호, 앞의 논문(2011), 79쪽.

66) 『英祖實錄』 권58 19년 11월 壬辰(13)

67) 김성운, 2002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壬午禍變」, 『역사와 경계』 43, 66쪽.

68) 『英祖實錄』 권63 22년 5월 己未(24)

69) 최성환, 앞의 논문 20쪽.

70) 『承政院日記』 英祖 22년 6월 4일

71) 『英祖實錄』 권64 22년 7월 壬戌(28) 김유경은 상소문에서 유봉휘를 역적[賊輝]으로 지칭하였다.

추탈을 요구하자<sup>72)</sup>, 조현명도 『감란록』에 이른바 “머리가 없다.”라는 것은 유봉휘를 괴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봉휘가 역란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sup>73)</sup>

조현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영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유봉휘가 무신란의 嚆矢라고 규정하였고, 바로 이어서 조태구와 최석항에게도 삭탈관작을 명하였다.<sup>74)</sup> 『감란록』 편찬 시 유봉휘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보호하였던 영조가 이제는 스스로 유봉휘를 무신란의 효시로 규정한 것은 대훈 선포 후 노론 중심으로 탕평정국이 변화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신란에 대한 역사인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이광좌에 대한 논란을 금지한 것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탕평의 지속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보인다.<sup>75)</sup>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1755년(영조 31)의 乙亥獄事<sup>76)</sup> 무신란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밝히 드러내버렸기에 이를 바로잡는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곧 소론 측 인물들에 대한 追罪를 의미하였다. 영조는 掛書事件을 일으킨 尹志의 근원인 尹就商·李師尙, 김일경의 疏下 6인 및 이들에게 잘못된 의리를 제공한 근원으로서 유봉휘와 조태구에게 역률을 추가로 시행하였고, 이광좌·최석항은 官爵 追削, 조태억에게는 직첩을 거두었다.<sup>77)</sup> 영조의 뜻은 김일경에게 협력한 소하 6인과 소론 5대신 중에서 유봉휘, 조태구에게는 역률을 추시하되, 나

72) 『英祖實錄』 권64 22년 9월 乙未(2)

73) 『英祖實錄』 권64 22년 9월 丙申(3)

74) 『英祖實錄』 권64 22년 9월 丁酉(4)

75) 이근호, 앞의 논문(2011), 83쪽. 이후 1752년(영조 28)에는 최석항도 다시 복관시켰다.

76) 을해옥사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李相培, 1992, 「英祖朝 尹志掛書事件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研究』 76; 裴惠淑, 1992, 「乙亥獄事の 參與階層에 關한 研究」, 『白山學報』 40; 조윤선, 2009,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の 추이와 정치적 의미」, 『韓國史學報』 37

77) 『英祖實錄』 권83 31년 3월 乙亥(2); 31년 3월 戊寅(5)

머지 3인에게는 차등을 두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78)</sup> 소론들은 의리에 관한 자신들의 근거를 거의 잃고 自訟하였지만 이것이 노론의 일당전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리어 영조는 노론 측 朝臣 70여 명에게도 당론을 하지 않겠다는 상소를 받아내는 등<sup>79)</sup>,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탕평론자들의 威臣·側近化는 가속화되었다.<sup>80)</sup> 이광좌, 최석항, 조태억이 분등 처벌된 것은 이런 영조의 의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81)</sup>

을해옥사는 11월 『闡義昭鑑』의 편찬으로 공식 마무리되었는데<sup>82)</sup>, 여기에는 『어제대훈』 이래 꾸준히 이루어졌던 영조의 정치적 처분들과 을해옥사로 확정된 국가의리가 모두 담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편찬의 기본 목적이 이번 옥사의 유래를 밝히는 것이었기에 무신란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해석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편찬 방침을 놓고 큰 이견이 발생하였지만<sup>83)</sup> 최종적으로는 신축년(1721) 이후의 사건들만을 기록하였다. 이미 확정된 대로 김일경, 박필몽, 유봉휘, 조태구에 대해서는 영조의 즉위를 방해한 逆으로 규정하였고, 최석항, 이광좌, 조태억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조태구, 유봉휘에 비해서는 차등을 두었다. 이에 비해 경종의 질환을 천명함으로써 건저를 요청한 노론의 행위는 충성으로 판정되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원왕후의 至愛와 경종의 至

78) 최성환, 앞의 논문, 33쪽.

79) 『英祖實錄』 권85 31년 9월 壬辰(21)

80) 이경구, 앞의 논문, 30쪽

81) 영조는 말년에 끝내 이광좌, 최석항을 모두 복관하면서 이들의 복관이 50년간의 고심이었다고 토로하였다. 『英祖實錄』 권119 英祖 48년 11월 庚戌(19)

82) 『英祖實錄』 권86 31년 11월 乙未(26)

83) 노론 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난역의 근원을 기사년 이후까지 소급하려던 측과 신임옥사까지만 소급하려는 측의 대립이 발생하였고, 또 이광좌, 최석항, 조태억을 유봉휘, 조태구와 같이 逆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대립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영조는 후자의 견해를 이끌어내면서 편찬의 책임을 원경하과 이천보에게 넘겼다. 최성환, 2004,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51~52쪽

友에 근거한 영조의 왕위 계승은 정당하였다는 것이었다.<sup>84)</sup>

『천의소감』은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권1은 신축, 임인, 계묘년인 경종 원년(1721)부터 3년(1723)까지의 주요 사건을 서술하였고, 권2는 갑진, 을사년인 경종 4년(1724)부터 영조 원년(1725)까지의 주요 사건을 서술하였다. 권3은 무신년인 영조 4년(1728)부터 영조 24년(1748)까지의 몇몇 주요 사건을 서술하였고, 마지막 권4는 을해년인 영조 31년(1755)의 주요 사건만을 서술하였다.<sup>85)</sup> 따라서 무신란과 관련되어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권3의 무신년 부분의 서술이다. 무신년 전체의 분량은 4板, 즉 여덟 쪽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무신란의 시말을 서술한 것은 세 쪽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이미 『감란록』을 통해서 征討와 鞫治의 내용 자체는 모두 다 정리되었기 때문이다.<sup>86)</sup> 하지만 나머지 다섯 쪽에 해당하는 『천의소감』 편찬자의 평가에서<sup>87)</sup> 을해옥사 이후 무신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유봉휘, 조태구의 疏箚 이후에 역당들의 계획이 날로 심해졌고, 김일경의 상소와 목호룡의 급서가 서로 和應하여 聖躬을 해하려는 방법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김일경이 대신 지은 교문에서 흥언과 무함하는 설을 방자하게 말하여서는 부도한 마음을 드러냈으니 사람이려면 누군들 切齒하지 않겠는가?
2. 갑진년(영조 즉위년)에 국문을 받아 伏法된 후에도 남은 무리들이

---

84) 최성환, 앞의 논문(2009), 38쪽

85) 『關義昭鑑』의 체제 및 각 권에 수록된 기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 소개는 김백철, 앞의 논문 참조.

86) 『關義昭鑑』 권3 戊申 “征討鞫治之始末 詳載勘亂錄”

87) 凡例에서는 이 평가를 ‘斷論’이라고 지칭하였다. 『關義昭鑑』 「凡例」 “一 凡斷論於記事 下低一字書以別之”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서는 어그러지고 사특한 말을 이어받았다. 처음에는 이천해의 변이 있었고, 이어서는 掛書의 변이 일어났다가 끝내는 稱兵하면서 京畿를 침범하는 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다행히도 하늘과 祖宗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사로잡았고 흥언의 내력과 역모의 근원이 招辭에 다 드러났다.

3. 이천해의 흥언은 이유익과 박필현이 만들어낸 것인데 반드시 심유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 것은 심유현이 왕실의 외척이기에 그의 말이 사람들을 쉽게 현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李順觀의 꾀서는 민관효, 이유익, 박필주가 지휘한 것으로 한결같이 김일경이 쓴 교문의 말을 따랐다.
4. 이인좌, 이응보, 정희량, 나승곤 등 여러 적들이 난을 일으킨 것 또한 이유익, 박필현, 심유현이 종용한 것이다. 이유익, 박필현, 심유현은 박필몽을 宗主로 삼았는데, 김일경과 박필몽은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인 자들이다.
5. 대개 이천해가 흥언을 한 이후 온 나라 臣民들은 반드시 그 말을 만들어서 사주한 자를 알고자 하였지만 도깨비 같은 情狀을 헤아릴 수가 없었고 梟獍의 窩窟을 파괴하지 못하였기에 輿情의 애통함이 하루도 늦추어지지 않았는데, 그 때에서야 흥괴들이 정상을 토설하고 모두 斧鉞에 엎드려지니 神人の 분노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게 되었다.
6. 그런데 금년에 와서 또 다시 申致運, 沈錐, 李夏徵, 尹志 등의 역변이 일어났으니 人心이 추락하고 승냥이 같은 본성을 교화하는 어려움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아아! 통탄스럽구나.<sup>88)</sup>

88) 『關義昭鑑』 권3 戊申

위의 설명을 통해서 『천의소감』에서는 무신란의 근원이 유봉휘와 조태구에게서 시작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746년에 영조와 조현명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었기에, 을해옥사 이후 유봉휘, 조태구를 무신란의 근원으로 삼는 것에 반대할 정치 세력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 소급되지 않은 것이 소론 측에게는 다행스런 상황이었다. 또한 『어제대훈』까지도 남아있던 무신란의 ‘최초 기원’으로서의 당숙과 당고에 대한 언급도 『천의소감』에서 만큼은 완전히 사라졌다.

무신란을 해석하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었던 『감란록』은 이제 그 역할과 위상을 『천의소감』에게 넘겨주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었다.<sup>89)</sup> 무신란에 대한 斷論인 위의 설명에 바로 뒤 이어서 유봉휘로부터 『감란록』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이세진의 언급을 마지막에 굳이 첨가한 것은 『감란록』의 구성과 내용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제 무신란을 해석하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 『감란록』이 아니라 『천의소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광좌와 조태억같이 무신란을 진압한 공로를 『감란록』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인물들이 오히려 『천의소감』에서는 무신란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재규정되었다는 점까지 추가하면 『감란록』은 이제 반란의 추이와 국문의 기록만을 담고 있는 문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게 되었다. 『감란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유대훈 선포 후에도 겨우 살아남았던 어제서문의 최종 수정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正祖 원년(1777)에 이루어졌다.<sup>90)</sup>

---

89) 같은 시기 『御製大訓』 역시 을해옥사 직후에 반포한 親製 敎文과 繪音이 첨가되어서 『御製添刊大訓』(奎 3782)으로 추가 간행되었다. 여기에서도 영조는 무신란의 근본이 유봉휘, 조태구임과 이광좌, 최석항의 잘못을 명시하였다.(『御製添刊大訓』 「御製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한편 『御製大訓』과 『御製添刊大訓』은 1766년(영조 42) 5포가 신원되자 다시 洗補된 후, 1769년(영조 45)에 刊行, 배포되었다.(『英祖實錄』 권107 42년 10월 甲子(28); 권112 45년 1월 乙巳(21))

## 맺음말

무신란에서 알 수 있듯이 즉위 직후부터 정통성에 커다란 도전을 받았던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천명하기 위해 각 붕당들의 협조와 동의하에서 국가의리를 서서히 단계적으로 확정해나갔다.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세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조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하였던 데다가,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정세세력들 간에도 국가의리를 확정하는 문제에서는 첨예한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영조의 정치적 노력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영조는 특유의 정치력과 탕평과의 등용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리를 단계적으로 확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것은 『감란록』, 『어제대훈』, 『천의소감』과 같은 국가의리서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세 문건은 영조의 탕평정국이 단계별로 확정하였던 국가의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세 건의 국가의리서에는 역사인식의 측면에서 무신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항상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무신란 진압 직후인 1729년에 편찬된 『감란록』에서 무신란은 김일경을 비롯한 소론 일부 과격파들이 저지른 역란이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붕당 간의 갈등과 당론이 최초의 근원으로서 해석되며, 소론과 노론의 공동 책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노론 서덕수의 책임이 김일경에 버금갈 정도로 규정되었다. 이는 영조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탕평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소론의 정치적 존재가 필요했던 영조 초기 정국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해석이었다. 한편 임인옥안이 소각된 후 1741년 신유대훈이 선포되고 그것을 간행한

90) 『承政院日記』 正祖 원년 10월 29일

『어제대훈』에서는 더 이상 서덕수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신원되었던 데다가 임인옥 자체가 무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제대훈』에서는 김용택, 이천기, 이희지, 심상길, 정인중의 5포의만이 무신란과 관련된 자들로서 규정되었다. 임인옥이 부정되지 않았던 시점의 『감란록』에서는 무신란의 발생에 노론 측의 잘못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면, 『어제대훈』에서는 오직 5포의만이 언급됨으로써 무신란을 양성하는 데에 끼친 노론 측의 잘못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무신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역사인식의 변화는 『천의소감』에서 나타났다. 1755년 을해옥사 처리의 최종 결과물이었던 『천의소감』에서 무신란의 발생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소론에게 돌려졌다. 그리고 무신란의 기원은 여태까지와 달리 김일경이 아니라, 이전부터 세계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 인물로서 해석된 유봉휘와 조태구까지 소급되었다. 무신란의 발발로부터 20년도 더 된 시점에서 발생한 을해옥사는 그간 노소론 간의 충돌되는 정치의리를 나름 공존시키고, 그 위에서 탕평정국을 운영하려던 영조의 정치적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신란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영조 재위 기간 중 단계적으로 확정된 국가의리는 무신란에 대한 해석의 문체와 表裏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즉 무신란은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조대 탕평정국의 변화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영조 집권기 최대의 핵심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무신란에 대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영조대 탕평정국의 변화 과정과 내용을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勘亂錄』(고려대학교 소장본, 대학원 B8 A62)  
『勘亂錄』(李離和 編 『朝鮮黨爭關係資料集 9』, 驪江出版社, 1984 수록본)  
『御製大訓』(奎 3929, 『英祖御製訓書 1』, 서울대학교 奎章閣, 2003 수록본)  
『御製添刊大訓』(奎 3782, 『英祖御製訓書 1』, 서울대학교 奎章閣, 2003 수록본)  
『闡義昭鑑』(李離和 編 『朝鮮黨爭關係資料集 9』, 驪江出版社, 1984 수록본)  
『黨議通略』(崔南善 編, 朝鮮光文會, 1912)  
『大典會通』(中樞院調查課編, 保景文化社, 1985 영인본)  
『景宗實錄』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 2. 논저

- 김백철, 2010, 「英祖의 義理明辯書 闡義昭鑑의 편찬과 정국변화」, 『精神文化研究』 121  
김성윤, 2002,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壬午禍變」, 『역사와 경계』 43  
裴惠淑, 1992, 「乙亥獄事의 參與階層에 關한 研究」, 『白山學報』 40  
이경구, 2004,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 『역사와 현실』 53  
이근호, 2011, 「영조대 후반 御製訓書의 간행 양상과 의의 - 『御製大訓』과 『御製常訓』을 중심으로」, 『藏書閣』 26  
李根浩, 2001, 『英祖代 蕩平派의 國政運營論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李相培, 1992, 「英祖朝 尹志掛書事件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研究』 76

사학연구 제116호(2014. 12)

- 李銀順, 1986, 「18세기 老論一黨專制의 成立過程: 辛壬士禍와 關義昭鑑의 논리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10
- 鄭萬祚, 1986, 「英祖代 中半의 政局와 蕩平策의 再定立」, 『歷史學報』 111
- 정만조, 2012, 「영조대의 정국추이와 당평책」,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조운선, 2007, 「英祖 6년(庚戌年) 謀叛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42
- 조운선, 2009,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韓國史學報』 37
- 최성환, 2004, 「영조대 후반의 당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 崔誠桓, 2009,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韓知希, 2012, 『朝鮮後期 政治上의 是非明辨論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태용, 2014,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勘亂錄』의 편찬」, 『韓國史研究』 166

## Abstract

# Compilation of publications on state justification and change of interpretation on Musin Revolt in King Yeongjo's reign period

Huh taeyong

Having been connected with the Iminoksa(壬寅獄事), King Yeongjo had to find some political ways to show off and consolidate his status as a unique successor of Joseon dynasty from the time of his enthronement. He persevered in his efforts to compromise the political justification of Noron with that of Soron by implantation Tangpyeong group figures of both political parties. Even after the Musin Revolt that had been broken to deny his legitimacy in 1728, he did not give up his efforts, and began to compile some publications on state justification such as *Gammannok*, *Eojedaehun*, *Cheonuisogam* in consecutive order which made by compromising the political justification of Noron with that of Soron. Bu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hange of interpretation on the Musin Revolt.

In *Gammannok* which compiled right after suppression of the Musin Revolt, Noron was regarded as guilty as Soron in that some figures of Noron such as Seodeoksu provided reason of the Iminoksa by attempt to commit treason against King Gyeongjong. In *Eojedaehun* which compiled in 1741, Noron took sentence of acquittal except five figures, because the Iminoksa was regarded as falsity to increase the legitimacy of King Yeongjo. Only five figures of Noron remained in the list of criminal to

provide Soron with the minimum political excuse to participate in his administration. *Cheonuisogam*, which compiled right after suppression of the Eulhaeoksa(乙亥獄事) in 1755, imputed the whole responsibility of the Musin Revolt to Soron, because the Eulhaeoksa revealed that many figures of Soron still did not admit the legitimacy of King Yeongjo. In sum, change of interpretation on Musin Revolt reflected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 of King Yeongjo's reign period.

Keywords : King Yeongjo, Musin Revolt, Tangpyeong, *Gamnannok*,  
*Eojedaehun*, *Cheonuisogam*